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정과제】 101-2.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및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1.11. 공포, '26.5.12.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다.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간 시행령에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위치, 관할구역 등을 삭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의 기능, 역할을 고려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관련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비법정 기구로 운영되어 지역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학생맞춤통합지원, 유보통합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교육 지원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러한 자율성에 뒷받침되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시도교육청 기구·인력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자율권을 부여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교육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3. 교육지원청 관련 현황

담당 부서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육자치협력과	책임자	과장	김진형 (044-203-6340)
		담당자	사무관	최경은 (044-203-6348)
			주무관	황아영 (044-203-6349)
담당 부서 <학교 행정업무 경감>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장	장세은 (044-203-6480)
		담당자	사무관	이연수 (044-203-6495)



붙임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3.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교육지원청의 명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지리적 위치 등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 및 별표 2”를 “법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를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로 한다.

제6조의 제목“(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를“(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지도·감독사무”를 “지원 및 지도·감독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육청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

제6조(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 각급 학교
----- 지원 및
지도·감독사무-----
-----.

1. ~ 7. (현행과 같음)
8. -----
-----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
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연 락 처	(044) 203 - 6348

붙임2**「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사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던 교육청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3. ~ 3.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에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장의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삭제한다.

1. 인구 수는 전년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학생 수는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각급 학교의 학생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위 표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통합된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4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해당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교육감	실장	국장	과장·담당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경 기도 교육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 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장학관 또는 3 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장학관 또는 4 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그 밖의 시· 도 교육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 학관		장학관 또는 3 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장학관 또는 4 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1명의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으며, 과·담당관 단위의 기획업무 기구의 장 밑에는 1명(경기도 교육청은 2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과장·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위 표의 과장·담당관 밑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 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4명 이내
 - 나. 경기도 교육청: 5명 이내
 - 다. 그 밖의 시·도 교육청: 2명 이내
4.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하 “감사기구”라 한다)는 과·담당관으로 두고, 그 밑에는 1명(경기도 교육청은 2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5. 제4호 및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은 3급 상당 개방형 직위로, 그 밖의 시·도 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생략) <u><신설></u></p> <p>② (생략)</p>	<p>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현행과 같음) <u>②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에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장의 각 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연 락 처	(044) 200 - 6348

붙임3

교육지원청 관련 현황

□ 교육지원청 일반 현황

- (개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별표2 등

- (현황) 176개 교육지원청 중 1개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139개, 2개 이상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37개 (전체 지원청의 약 21%, 시 단위 28개, 도 단위 9개)

※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군·자치구(75시·82군·69자치구),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전체	11	5	4	5	2	2	2	-	25	17	10	14	14	22	23	18	2	176
통합	11	5	3	3	2	2	2	-	6	1	1	1	-	-	-	-	-	37

□ 교육지원청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현황

시·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도봉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종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양천구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구	성북구, 강북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남구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북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중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중구, 동구, 수성구 서구, 북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부평구 서구 중구 남동구 강화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미추홀구, 동구, 용진군 연수구, 남동구 강화군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북구 서구	동구, 북구 서구, 남구, 광산구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울산 광역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남구 북구	울주군, 남구 중구, 동구, 북구
경기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평택시 안양시 군포시 오산시 광주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광명시 여주시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평택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오산시, 화성시 하남시, 광주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광명시 여주시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이 천 시 용 인 시 안 성 시 김 포 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춘 천 시 원 주 시 강 릉 시 속 초 시 동 해 시 태 백 시 삼 척 시 홍 천 군 횡 성 군 영 월 군 평 창 군 정 선 군 철 원 군 화 천 군 양 구 군 인 제 군 고 성 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충청북도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충 주 시 제 천 시 청 주 시 보 은 군 옥 천 군 영 동 군 진 천 군 괴 산 군 음 성 군 단 양 군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천 안 시 공 주 시 아 산 시 보 령 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보령시

	<p>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p>	<p>서 산 시 금 산 군 논 산 시 부 여 군 서 천 군 청 양 군 홍 성 군 예 산 군 태 안 군 당 진 시</p>	<p>서산시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p>
<p>전북특별 자치도</p>	<p>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p>	<p>전 주 시 군 산 시 익 산 시 정 읍 시 남 원 시 김 제 시 완 주 군 진 안 군 무 주 군 장 수 군 임 실 군 순 창 군 고 창 군 부 안 군</p>	<p>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p>
<p>전라남도</p>	<p>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p>	<p>순 천 시 나 주 시 여 수 시 광 양 시 목 포 시 담 양 군 곡 성 군 구 례 군 고 흥 군 보 성 군 화 순 군 장 흥 군</p>	<p>순천시 나주시 여수시 광양시 목포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p>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목포시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안동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포항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안동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포항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창원시 진주시	창원시 진주시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통 영 시	통영시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사 천 시	사천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김 해 시	김해시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밀 양 시	밀양시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거 제 시	거제시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양 산 시	양산시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의 령 군	의령군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함 안 군	함안군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창 녕 군	창녕군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고 성 군	고성군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남 해 군	남해군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하 동 군	하동군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산 청 군	산청군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함 양 군	함양군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거 창 군	거창군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합 천 군	합천군